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293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양진석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21.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소174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277,02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년경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제1층 제상가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F 사우나’의 운영권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재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G(법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6. 12.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건물 제17층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1,890만 원)를 마치고 돈을 대출받아 그중 1억 1,800만 원을 G을 통하여 원고들 측에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전에 진행되던 경매절차는 2014. 6. 17. 및 2014. 7. 17. 취하되거나 취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4카경60988)에서 원고들 측 K가 2015. 12. 2. 이 사건 건물을 35억 4,4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2015. 12. 9.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런데 K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위 재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타에 매각되어 2016. 5. 17. L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측에 투자한 1억 1,8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오인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3. 15.부터 2015. 11. 1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5,277,021원을, 원고 B은 2016. 2. 22. 소외 M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1억 1,800만 원이 투자금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이 되고,

피고는 이자를 받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각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1) 원고 B이 원고 A을 대리하여 2015. 3. 15.부터 2015. 11. 1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5,277,021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 B, 소외 N, O, P,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2015. 11. 23. 자 합의약정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1억 1,800만 원 이외에 이익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이 낙찰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금의 분배를 약정한 사실, ② K와 원고 B이 피고에게 작성해준 2016. 2. 19. 자 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낙찰되면 K와 원고 B이 피고의 투자금 및 약정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기로 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B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8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B은 “원고(C를 말한다)가 은행에서 빌려 투자한 것이니 은행에 지급할 이자는 피고(B을 말한다)가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송금 경위에 관해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투자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 B의 변론 내용,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15,277,021원은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5,277,021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1)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B이 M를 통해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M를 사기로 고소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M가 활동비 명목으로 요구하여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 B이 M를 통해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 B이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 B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오덕식, 판사 조규설